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수출입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 설치된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의미합니다.

종합상담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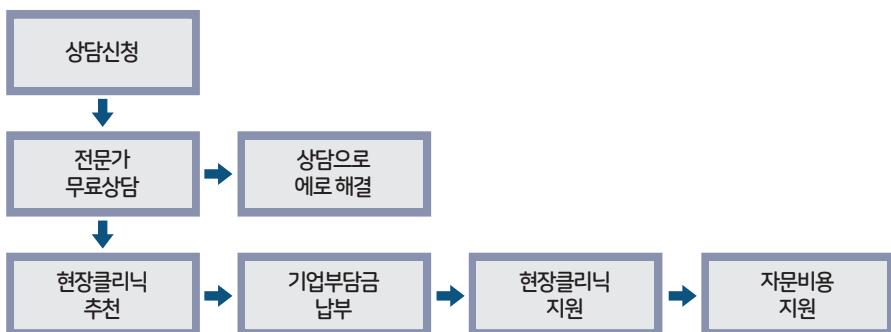
비즈니스지원단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무료로 상시 상담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클리닉이란?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에 애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면중 수시)



인터넷 : 비즈니스지원단(smes.go.kr/bizlink/)

전화 : 콜센터(☎1357) 또는 각 지역별 비즈니스지원단

구분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원실	02-2110-6351~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831-1357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052-210-0031~2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659-2270~3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054-859-8162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지 12	062-360-9137~9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061-727-5416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시험연구센터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064-723-210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805~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6호	031-820-9040~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032-450-1148~1150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81~3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564-38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25~6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대전동 897-2)	033-655-4147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07~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36~9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46~8

가이드북 일러두기



| 수출입분야 |

1. 수출분야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관련 다수의 국제협정 및 국제규칙(국제물품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HS 협약, 관세평가협약, Incoterms 등), 관세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각 FTA협정문,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주요법령은 법전이나 법제처(www.moleg.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상세무역관련 정보는 각 통상관련부처(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및 관청(관세청(www.customs.go.kr), 관세평가분류원(cvnci.customs.go.kr 등),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대한상공회의소(www.kor cham.net), 무역협회(www.kita.net))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3. 품목분류(HS code)와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주로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관세청(www.customs.go.kr)과 무역협회(www.kita.net) 사이트 내에 있으며, FTA 관련 정보는 FTA 포털사이트에 모아져 있습니다.

CHAPTER
01

수출입

-
- 1. 수출일반
 - 2. 수출계약 및 절차
 - 3. 관세통관
 - 4. 관세환급 및 품목분류
 - 5. FTA 일반
 - 6. FTA 적용 및 통관
 - 7. 원산지판정
 - 8. 원산지 서류 및 관리

CONTENTS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가이드북 일러두기

1. 수출일반

Q1.	수출지원 금융제도	10
Q2.	수출실적인정	11
Q3.	수출 환율변동위험 관리	12
Q4.	수출 방법	13
Q5.	보험계약 조건	14
Q6.	수출 제한품목의 수출	15
Q7.	수출컨설팅의 활용	16

2. 수출계약 및 절차

Q8.	수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8
Q9.	인코텀즈	19
Q10.	조건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20
Q11.	완전합의 및 분리조항	21
Q12.	결제조건	22
Q13.	국제분쟁의 해결	23
Q14.	국제운송 주선인(포워더)	24
Q15.	B/L 발급문의	25
Q16.	해상적하보험	26
Q17.	수출보험	27

3. 관세통관

Q18.	통관절차의 비교	30
------	----------	----

Q19. 수출통관 검사	31
Q20. 수출입통관 전자식 서류제출	32
Q21. 통관특례제도	33
Q22. 수출관세율 및 외국 품목분류의 검색	34
Q23.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사례	35
Q24. 전략물자 수출절차	36
Q25. 간이통관제도	37
Q26. 관세평가의 의미와 내용	38

4. 관세환급 및 품목분류

Q27. 환급제도의 활용	40
Q28. 환급요건	41
Q29. 환급을 위한 양도세액 증명서류	42
Q30. 품목분류 적용방법	43
Q31. 품목분류 상 문제해결 방법	44
Q32. 품목분류 통칙에 대한 이해 방법	45
Q33. 품목분류가 어려운 사례	46

5. FTA 일반

Q34. FTA 현황에 대한 이해	48
Q35. FTA 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 및 적용	49
Q36. FTA 적용효과에 대한 사전평가	50
Q37. 메가FTA의 전망과 특혜세율의 적용	51

6. FTA 적용 및 통관

Q38. 계약 전에 필요한 FTA 고려과정	54
Q39. FTA 세율의 적용순서	55

Q40.	FTA 협정세율의 확인 및 적용	56
Q41.	FTA 협정관세율의 미적용	57
Q42.	FTA 통관절차의 특징	58
Q43.	FTA 세율의 사후적용	59
Q44.	FTA 등 제반 원산지 규정	60
Q45.	FTA 통관 신고오류 발생사유	61
Q46.	원산지표시 의무	62

7. 원산지판정

Q47.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64
Q48.	농수산물에 있어서의 완전 생산기준	65
Q49.	부가가치 기준의 적용	66
Q50.	세번변경 기준의 적용	67
Q51.	부가가치 기준에서의 용어	68
Q52.	부가가치 결정기준에서의 조정가치 산출	69
Q53.	원산지 판정 문제발생의 사례	70
Q54.	한-중 FTA 양허세율의 적용	72

8. 원산지 서류 및 관리

Q55.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서류	74
Q56.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 유의할 점	75
Q57.	원산지증명서의 근거서류	76
Q58.	원산지 관리 솔루션의 활용	77
Q59.	통관서류 보관의무와 원산지서류에 대한 보관의무 간의 차이	78
Q60.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의 효과	79
Q61.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별 차이점	80
Q62.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주요 관리사항	81
Q63.	원산지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82

편집위원 소개

1. 수출일반

Q1

적극적으로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대금 회수기간이 길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 이용 가능한 주요 금융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등의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활용이 많은 무역금융 형태의 선적전 금융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범위는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입니다.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이며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매입 시 정산기준입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등은 30억원 이내), 대출금리(변동금리)는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6%p가산(기준금리) 적용됩니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지원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마케팅을 위해서는 무역협회를 통해 무역기금(고정금리 연 4%)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어해설

무역금융 : 수출기업이 계약 후 제품생산, 선적,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Q2**수출 후 객관적인 수출실적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수출실적인정 방법과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혜택은 무엇입니까?****A**

수출은 크게 직수출과 기타 수출로 대별됩니다. 직수출은 수출자의 자격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하여 수리된 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입니다. 기타수출은 중계무역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 수출, 전자적 무체물 수출 등의 수출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제28조에 따라서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되어있고 기타수출에 속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용역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외화입금증빙 등 구비서류의 스캔파일본을 준비한 뒤,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확인 및 증명서발급사이트(<http://onlinetrade.kita.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을 위해 KITA.net 대표 ID(협회 정회원) 또는 KITA.net 무료 ID와 무역업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출실적 증명을 발급받으시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또는 금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0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및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우대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국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Q3

운송기간이 길고 계약체결 시부터 대금결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초래됩니다. 수출거래 시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환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의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에 필요한 환율관리를 적절히 한다면 흰차손을 줄이고, 관세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증견기업이 입게 되는 환율변동에 따른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영리 보험인 '환변동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Hedge)하는 상품입니다.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보험 대상통화는 USD, JPY, EUR, CNY이며,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국내기업이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 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신용등급에 의거 특례평가 G급 또는 R급인 기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험이 있거나, 이익금을 연체 중인 기업, 국민연금보험료 연체중인 기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용어해설

환헤지(Hedge)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는 것.

Q4

계약 단계에서 결정 될 수 있는 주요 수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처음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어떤 방법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무역계약 체결 시에는 가격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등 정형거래조건을 채택하여 구체적인 수출방법을 결정합니다. 관련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상관습과 실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조건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해 국제무역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가장 보편화된 규칙은 Incoterms인 것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①상호간 계약 및 대금지불방식 채택, ②귀사 상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확정(간이정액 해당 여부 판단), ③신용장 방식일 경우에 신용장 판독 학습, ④수출서류 작성요령, ⑤수입자 측에서 원산지증명서 요청할 경우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습득, ⑥수출 포장방법 채택(고가장비인 경우 방청/방습포장 판단), ⑦수출방법 채택(해상/항공), ⑧수출수량에 따른 수출물류비 원가 산정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조건과 함께 고려하게 되는 수출방식에는 직수출을 비롯하여 중계무역, 중개무역, 위탁판매방식 수출 등 간접수출방식이 적용되기도 하며, 직접 수출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대행사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판매방식의 수출은 수입국의 시장과 상황을 잘 아는 판매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출경험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입국에서의 판매부진 등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출여건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HS Code : 관세 및 통계목적으로 거래물품에 부여하는 부호.

Q5

수출 시 원거리 운송에 따른 운송 중 위험을 고려하여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여 손해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계약조건 체결 시 보험 조건에는 어떤 것이 명시되어야 하고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해상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발생의 객체는 모두 해상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을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선박 자체의 훼손 또는 선박 보존을 위해 지출된 경비, 선박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해상적하보험 계약자는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당사자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이익에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부보조건과 보험료율 등을 정한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합니다. 이때 보험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여야 만약의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내용은 선적항, 선박명, 출발항, 도착항, 보험화물, 보험금액, 보험조건 등이 기재됩니다. 보험조건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보험조건을 선택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 회사마다 보험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보험조건을 구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해상적하보험 : 항해에 관한 사고로 적하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Q6

수출입 공고상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기 전에 거쳐야할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일반 품목의 수출 절차와 다른 점은 어떤 것입니까?

A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을 수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일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무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추천기관 등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 승인이란 우리나라 수출 관련 공고에서 추천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일 경우, 이와 관련된 자격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 계약서(공급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단 당해 승인기관에서 제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 수출의 경우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Q7

수출을 시작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출업무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컨설팅을 활용법은 무엇일까요?

A

수출은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수익의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관심있 기울이고 여러 해 준비를 합니다. 이때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수출컨설팅입니다.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력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므로, 접근을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거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수출컨설팅은 주관기관 별로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한 컨설팅 지원을 각 기업에 맞게 잘 조합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컨설팅기관이나 컨설팅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업무를 동시에 빠르게 지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컨설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풍부한 경험입니다. 실제로 체험을 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적기에 제시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아웃소싱을 하되 기업의 품목, 수출여건, 성장단계 등에 맞는 지식과 정보의 동원이 가능한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해설

수출 컨설팅 : 수출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컨설팅으로 현재는 주로 수출업무 중심의 컨설팅과 FTA 활용 중심의 컨설팅으로 구성.

2. 수출계약 및 절차

Q8

무역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계약서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A

무역 계약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수출업자가 작성할 때는 ‘매도계약서·주문확인서’라고도 합니다. 무역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자체에 대한 사항 및 계약 이행을 위한 사항, 계약불이행시 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품자체에 대한 사항에는 거래하는 상품의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등이 포함되고, 계약이행을 위한 사항에는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이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위반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시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으로는 불가항력 조항이 있고 계약위반에 대한 것은 클레임 조항, 중재 조항 및 준거법 조항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거래 자체에 대한 거래조건은 인코텀즈 상의 정형거래조건을 통해 정합니다. 또한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작성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모든 계약의 모든 조항에 대해 철저하게 협의한 다음 하나의 문서로 작성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포괄계약서 및 표준계약서의 체결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어해설

정형거래조건 : 다양한 국제 상관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된 거래조건

Q9

수출계약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인코텀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인코텀즈란 각국의 상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해 무역업자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형거래조건 해석을 위해 제정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입니다.

인코텀즈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해 규정한 규칙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인코텀즈에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판매 가격을 견적할 때 혼동하기 쉬운 물품의 각종 비용 범위를 정형화시켜두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 INCOTERMS 2020은 11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규칙으로 EXW, FCA, CPT, CIP, DAP, DPU, DDP가 있습니다. 그러나 FAS, FOB, CFR, CIF 규칙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수출입 통관 시 기준이 되는 조건으로는 FOB와 CIF가 기준이 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가격조건 뿐만이 아니라 인도 및 위험이전에 대한 책임도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됩니다.

용어해설

인도 및 위험이전 : 물품의 인도와 물품에 대한 위험의 책임이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되는 것.

Q10

정형거래조건은 단순히 가격조건 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도 및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FCA, FOB, CIF 조건의 경우 이러한 의무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정형거래조건은 무역거래시 무역조건을 정형화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상관습과 실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조건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해 국제무역규칙이 제정된 것입니다.

FCA (Free Carrier) 조건의 경우 적출지 즉 수출국 인도조건으로서 주요운임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무역조건입니다. 물품이 적출지에서 수입업자가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위험부담이 수입업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적합합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의 경우도 역시 적출지 인도조건으로써 주요 운임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무역조건입니다.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때 위험부담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되며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 적합한 무역조건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도 적출지 인도 조건으로써 주요 운임 포함조건입니다. 물품이 적출지에서 수출업자가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즉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위험부담을 이전하는데 이때 수입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업자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용어해설

가격조건 : 무역조건 중 수입자가 지불할 물품대금 산출을 위한 조건.

Q11

수출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계약이행을 위한 조건들입니다. 그 가운데 완전합의 조항과 분리조항의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A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은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합니다. 거래교섭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는 조항입니다. 즉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그 계약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던 의견교환이나 합의 또는 약속 등은 정식으로 체결 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통합 되어 소멸하고 따라서 기존의 것과 계약 내용이 상치되더라도 과거의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내용만이 유효하다는 조항입니다.

계약 분리조항(Severability clause)은 계약의 일부조항이 무효라고 해도 기타 조항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때에 계약자체가 무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용어해설

계약이행 : 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른 각자 의무의 실행.

Q12

과거 대표적인 결제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신용장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방식이 많이 사용되나요? 그리고 그런 방식의 특징과 이점은 무엇입니까?

A

대표적인 대금 결제 방식으로는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 추심 방식에 의한 결제, 송금 방식에 의한 결제 등이 있습니다.

송금방식 이란 송금환에 의해 결제하는 것으로 은행송금과 우편송금이 있습니다. 은행송금은 보통 송금과 전신송금(T/T)으로 분류되며, 외국환의 경우 주로 은행송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식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심결제방법	신용장	송금방식		
			COD	CAD	T/T in advance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점	대금 회수가 부상 안됨	대금 회수가 보장됨	대금 회수가 보장 안됨	대금 회수가 보장됨	대금 회수가 보장됨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점	선적 확인 품질 불확인	상품 인수가 보장됨	상품 인수가 보장 안됨		
대금 지급 보증	없음	신용장 발행 은행	은행·개인		
결제용 서류	환어음 선적 서류		선적서류		

화환결제방식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서류를 첨부해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신용장 방식보다는 추심방식이나 송금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용어해설

추심방식 : 물품 선적 후 물품의 인도 또는 인도 후에 대금을 청구하여 결제 받는 방식.

Q13

불행하게도 수입처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A

해외바이어와 거래하다보면 운송문제, 수입상의 마켓클레임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비책으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제도를 활용, 계약서에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 삽입 등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와 같은 해결방안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민, 상사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단,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재법과 유엔협약에 의해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 보장됩니다. 중재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 의하게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거래처 선정과 계약체결과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용어해설

마켓클레임 : 사소한 하자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전략적인 클레임.

Q14

수출의 경우, 운송을 위해 포워더를 이용하는 경우가 중소 기업의 경우에 많습니다. 국제운송에서 포워더의 활용은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포워더는 수출입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송과정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행해 주는 복합운송 주선인입니다.

포워더의 역할은

- ①본선과의 화물 인수·인도(수출업자 또는 송화인의 위탁에 따라 수출화물을 본선에 인도하고, 수입업자 또는 수화인의 위탁에 따라 수입화물을 본선에서 인수)
- ②전문적인 조언(화물의 전 운송구간에 걸친 소요 비용, 소요 시간, 신뢰성, 경제성을 감안해 가장 적절한 루트를 지정)
- ③운송의 수배(수출업자 또는 송화인을 대신해 전 운송 구간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운송기관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묵적지의 사무소 또는 대리점에 연락해 화물 인도시 지연되지 않도록 수배) ④관련 서류 작성(포워더와 관련된 서류 또는 취급 업무로는 선하증권, 항공운송장이나 이와 유사한 서류, 통관서류,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포워더가 직접 서류를 작성 또는 화주가 작성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조언제공)
- ⑤통관수속(주요 항만이나 공항에 사무소를 두고 세관원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화주를 대신해 통관 수속대행)
- ⑥운임 및 기타 비용 일체 지불(화주와 통상의 거래 관계가 확립돼 있는 경우 포워더는 고객을 대신해 모든 비용을 지불) 등의 기능을 합니다.

위와 같은 포워더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주 대신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수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중소 무역업자일 경우 운송주선업자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복합운송 주선 : 해상, 항공 및 육상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을 일률적으로 중개하고 대리하는 주선행위.

Q15

B/L을 발급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수하인에게 B/L 발급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A

B/L(Bill of Lading)은 국제운송서류입니다.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거리인 것이 특징인데 국가간에 운송을 위해서는 대량운송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해상운송이 많이 이용됩니다. 이러한 선박을 이용한 운송을 위해 발행되는 것이 선하증권입니다. 따라서, B/L은 화주와 운송회사 즉, 선박회사와의 체결된 운송계약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또한, 운송물품에 대한 이전과 소유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이므로 매우 중요한 무역서류입니다.

선하증권(B/L)의 발행 순서는 선복요청서(S/R) → 선복예약 → 선적지시(S/O) → 본선수취증(M/R) → 선하증권(B/L) → 화물인도지시서(D/O)이며, 컨테이너 전용선의 경우에는 상기의 본선수취증(M/R)이 아니라 부두수취증(D/R)로 대체됩니다.

또한 B/L은 포워더에 의해 발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B/L은 운송회사가 직접 발급한 Master B/L과 구분하여 House B/L이라고 합니다. 결국 운송회사는 운송료 등을 지급받고 B/L 수령의 요건을 갖춘 수하인에게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수하인의 의무이행을 확인한 후 양도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수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과정의 진행을 수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하인도 운송계약상의 이해관계인이므로 적절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수하인은 도착항에서 운송회사에 인도지시서를 제출하고 물품을 인수하면 됩니다.

용어해설

인도지시서 : 대금결제와 운송서류 인도 후 운송회사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최종적으로 지시하는 서류

Q16

해상적하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해상적하보험의 이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해상보험이란 해상위험, 즉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계약입니다. 여기서 해상위험이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좌초·침몰·폭풍우 등의 자연적인 위험과 해적·강도·전쟁 등 인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을 경우 통상적으로 손해를 입은 화주는 선하증권이면의 운송계약에 근거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운송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및 대비를 위한 수단이므로 그러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화주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담보수준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나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약관은 운송인의 면책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실제 운송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의 원인에 따라 운송인이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송인은 해상운송 시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본인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운송인이 좌우할 수 없는 항해과실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해상적하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운송약관 : 운송회사의 책임이 명기되는 화주와 운송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운송서류에 기재되는 약관.

Q17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하기 힘든 경우인 수입업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가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A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도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지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이 바로 '수출 보험'입니다.

현재 국가 간의 수출지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수출 지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간접지원 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수출에 따른 '무역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완벽한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보험의 주요기능은

- ①수출 거래상의 불안 제거 기능,
- ②금융 보완적 기능,
- ③수출 진흥 정책수단으로써의 기능,
- ④해외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가능 등입니다.

각 업체 별로 적합한 수출 보험(단기, 중장기, 신용보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수출보험의 조건이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어해설

수출보험 : 해상위험에 의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 등이 대표적.

무역사기 : 발생되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속임수에 의한 사기 행위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수출입

3. 관세통관

Q18

관세관련 통관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3가지 통관절차, 수출·수입·반송 통관절차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개념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관이라고 합니다.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수출·수입·반송 통관으로 구분됩니다. 반송통관은 수출과 이동방향이 동일하므로 수출통관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 ① 수출 통관은 대외무역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적법한 물품을 관세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국물품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 수출하는 물품과 거래 내역이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각종 무역 관련 국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세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 ② 수입통관은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 한 후 부두를 수배해 물품을 하선하고,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이를 검토해 창고 배정을 받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하며, 필요한 경우 수입 검사 등을 받은 후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 ③ 반송통관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어떤 사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관절차를 EDI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신고, 검사(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리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통관절차의 진행은 수출입 화주와 관세사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식 문서교환 방식.

Q19

수출통관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통관검사의 의미와 검사결과에 따른 처리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수출신고물품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합니다. 다만, 수출통관 시스템에 의해 선별되어 물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당해 물품 장치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 등 우병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이 감안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 또는 차량이동형 검색기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품검사가 필요한 신고물품, 현품검사 및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는 검사후 수리에 의해 수출신고가 수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수리되거나 검사생략 물품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의 확인만으로 수리하는 즉시수리가 적용됩니다.

용어해설

통관검사 : 통관과정에서 서류검사 외에 물품에 대한 행해지는 실물검사.

Q20

수출입신고는 기본적으로 P/L신고가 적용되고, 더욱 간소화되고 있는데 서류제출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A

P/L신고방식 원칙 외에 기존의 서류제출 대상에 대해서도 2012년 7월부터 전자식 서류 제출이 EDI 방식에 부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출입신고 시 제출되는 첨부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의 절감 및 수입신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인편, FAX, 우편으로 제출했던 방식과는 달리 송품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등을 UNI-PASS 첨부서류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서류제출은 AEO인증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아직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서류제출 중 전자식 서류제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① 협정·고시상 종이 원본 제출·확인이 필수적인 경우(김벌리프로세스 증명서, ATA까르네 관련 서류, SOFA 협정 관련 서류)
- ②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15호(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등 특별히 규정된 물품은 제외)
- ③ 세액 심사 등을 취해 추가 서류 제출이 많고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 설명 등이 필요한 부과고지, 신고수리 전 반출 대상 물품의 경우
- ④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 ⑤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나 화질 저하 등의 이유로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용어해설

UNI-PASS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Q21

일반적으로 통관 건수가 많으므로 행정상 편의 및 효율을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시 활용도가 높은 특례제도를 설명해 주세요.

A

수출입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의 혜가를 받고 세관을 통과하는 일을 말합니다.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리 및 납세, 반출의 순서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체로 수입업체의 신용도가 높거나 일정한 품목 또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관특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항·입항전 신고, 신고수리 전 반출, 서류제출의 생략, 담보제공의 생략, 월별납부, 관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분할납부, 용도세율의 적용, 간이통관, 공제율 또는 가산율의 적용, 가격신고의 생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간 및 비용면에서 이익이 되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특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 별로 전문가와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여야 문제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용어해설

월별납부 : 관세 등을 수입 시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수입발생 월의 말일에 일괄하여 납부하는 제도

Q22

수출상대국에 따라 수출품의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 많은 수출국에 대한 수출관세율과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의 확인을 통해 각 수출 상대국에 따른 수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사용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고, 영문이나 자국어로 계재가 되기 때문에 현지 소재 기관의 직원 등에게 문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설명을 드리면, 품목분류의 확인 방법으로는 첫째, 관세사 등을 통한 확인 방법 둘째,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하는 방법,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탈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세계 HS 코너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점차 더 많은 확인을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품목분류는 간이환급액 결정 등 회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각국의 관세율이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수출관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요한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은 상기한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밖에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네비(<http://tradenavi.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각국의 관세관청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의 해석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히 각국의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사이트 주소를 확인한 후 검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FTA(Free Trade Agreement) : WTO 체제하에서 무역 당사자 양자간 특혜적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Q23

최근 상표활용의 확대와 브랜드화의 진행으로 상표권 보호가 수입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어떤 경우에 허용됩니까?

A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된 물품(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되었다는 것은 일단 외국에서 최초의 판매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하여 적절한 결제적 보상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을 구매하여 원 제조업자의 의지 또는 수입국의 전용수입업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병행수입품은 위조 상품이나 밀수품 등과는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병행수입품은 진정상품(genuine products)이지만 통상적인 수입경로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입되는 것이 특징이며, 상표권등록이 되어있는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서는 그 등록회사에 통보하게 되고 상표권침해가 없는 병행수입대상으로 판명될 때는 수입통관이 허락되게 되는 것이며 반복하여 수입될 때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표권자에게만 제조 및 수입이 허용되면 경쟁이 제한되어 상품의 본질적 기능을 초과하여 상표권자가 과도한 이윤을 취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권이 주어진 경우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지사나 대리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만, 제조사설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허용여부는 관세청이나 특허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

용어해설

전용수입업자 :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권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수입업자.

Q24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이 수출되어 국제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략물자 수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가요?

A

수출제한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 시에 수출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승인 대상물품이므로 수출제한의 요건구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수출승인권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있으나 일반상업용 물자, 방산물자, 핵 관련 물자와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의 경우 지식경제부(수출입과), 국방부(수출진흥과),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통제과) 같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출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는 수출승인신청서, 신용장이나 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 수출입 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국가보안 또는 세계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무기 또는 테러용 물품제조 등에 사용 가능한 물품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승인을 얻은 다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의 판정과 수출허가 등의 서비스는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에서 수행합니다.

용어해설

전략물자 : 국가안보나 세계평화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무기 등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군사적 위험물품.

Q25

소액물품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통관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방식의 통관을 거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됩니까?

A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건을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부터 송부 받은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

여행자가 개인용 물품이나 선물로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화물로 택송하여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외국의 친지나 친구가 우편으로 보내온 선물이나 국내 거주자가 대금을 송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단, 1000불 초과시에는 정식으로 수입하고하여야 함), 외국의 친지나 관계 회사에서 보내온 선물, 견본 또는 하자보수용 물품이나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을 포함한 택송품 또는 특급 택송품만이 대상이 됩니다.

간이세율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조세를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은 말합니다. 1000달러가 넘는 제품의 세율은 20%이상이기는 하지만 그외 일반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주로 사오는 제품은 대부분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어해설

간이통관 : 일반신고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통관 방식.

Q26

수입통관 시 관세액 산출을 위한 절차인 과세가격결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A

관세평가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의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산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text{거래가격} = \text{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text{공제요소 금액} + \text{가산요소금액}$$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관세부과를 합리적으로 명목상이 아닌 실제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입니다. 공제요소 금액(수입 후 기술지원비용,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비용 등)이란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합니다. 가산요소(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 생산지원비용, 특허권 등 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이를 가산하게 됩니다.

용어해설

사후귀속이익 : 물품의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매대금이 포함되나 주식배당금 등은 제외.

4. 관세환급 및 품목분류

Q27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정확한 소요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환급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관세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며, 세 부담 경감을 통한 수출지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환급대사용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환급방법에는 개별환급이 있으며,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정액환급에 의해 환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액이 큰 경우에는 간이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용으로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소요량을 일일이 산하여 신청하지 않고 금액 10,000원 당으로 고시되는 간이정액환급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의 산출이 손쉬운 방법으로 중소기업이 적용하기 편합니다. 반면에, 개별환급의 경우는 근거자료에 의해 소요량을 우선 계산하고 그 소요량에 따라 수출업체 등이 직접 환급액을 계산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이 방식에 의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액이 더 큰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산출을 해보고 유리하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을 한 후 개별환급을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용어해설

수출용 원재료 : 수출용 물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로 환특법상의 환급대상 물품.

Q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으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환급요건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 ①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환급대상 수출)
- ②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합니다(환급대상 수입)
- ③ 수출용 원재료를 일정기간 내에 수출하여야 합니다(수출이행기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입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급대상수출에는 일반유상수출 외에도 일정한 무상수출,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일정한 판매 또는 공사,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에 대한 공급 등이 포함됩니다. 수출이행기간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됩니다. 환급신청은 수출자, 제조자, 수출대행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환급이 가능한 세관 중 관할지 세관에 하면 됩니다.

용어해설

소요량계산서 : 개별환급 시 수출용 물품의 제조 및 가공에 해당 원재료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사용량을 계산한 산출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서.

Q29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환급액 산출을 위해 환급과정에서 사용되는 양도세액
증명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수입 원재료가 수출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가 여러 단계의 제조 가공과정을 거치거나 국내의 중간 판매자들에 의해 거래 후 사용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을 중간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액을 양도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두 가지가 조합된 여러 형태의 분할증명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양도세액의 산출은 환급세액 산출방식과 동일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중간단계에서 제조가공을 거치는 경우에 사용되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제조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공급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용어해설

환급세액 :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의해 산출된 환급대상 금액으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납부된 세액과 동일.

Q30

수출업무를 진행하면서 HS code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가 매우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A

품목분류란 무역대상 품목 등에 대해 과세, 거래 또는 통계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일정한 상품명과 부호를 통일하여 쓰도록 정한 분류체계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HS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 방식을 적용하여 자국의 HS 체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명과 부호가 국가별로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기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어려운 것은 통일적인 원칙이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하기에는 물품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HS 10단위의 숫자는 12,000여 개에 불과하여 여러 물품이 하나의 HS code에 의해 불가피하게 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체계를 일시에 이해하기보다는 주요 물품을 중심으로 HS code가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살펴보고, 주의하여야 할 규정을 중심으로 분류사례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속건표를 잘 이해하고 여러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통칙규정을 적용하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세사건에 있어 HS 품목분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해설

분류사례 : 분류대상 물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세 번으로 분류된 물품에 대한 분류이유와 결과의 예를 의미.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이 대표적인 예.

Q31

당사는 최근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HS code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정정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세관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A

품목분류는 반복 수출입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 결정되면 적용에 어려움이 적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거나 신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등과 같이 아직 취급되지 않은 물품을 다루게 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분류 상의 오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오류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품목분류에 따라 제반 요건이나 세액 등이 모두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세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의 이유를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 심의를 신청하여 판정을 받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처리 보다는 사전조치가 유리하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거나, 세관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수출입신고 절차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 HS code를 확인한 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용어해설

품목분류사전심사 :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출입 신고 전 관세청에 의뢰하여 품목분류를 사전적으로 판정 받는 제도.

Q32

품목분류에 적용되는 관세율표 통칙은 문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분류 시 적용되는 통칙을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품목분류에는 호 용어, 주 규정과 통칙이 적용되어 법적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됩니다. 통칙은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순서를 정한 것으로 국내 관세율표의 경우 통칙1-7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①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 규정으로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및 류의 주에 따라 분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통칙 제2-4호는 종속적 분류규정으로 불완전, 미완성 또는 미조립, 분해 물품, 타(他)재료나 물질이 혼합 또는 결합물품,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혼합, 복합, 소매세트, 최종호 분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통칙 제5-6호는 보충적 분류규정으로 케이스 및 용기 분류,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 분류를 규정합니다.
- ④ 통칙 제7호는 한국규정으로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는 규정입니다.

통칙은 우선 적용순서에 익숙해져야 하며, 품목을 불문하고 기본적인 분류원칙이므로 적용 예를 통해 이해하면 조항내용의 기억에 의하지 않고 숙지와 적용이 쉬워질 것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통칙 1		호 용어, 주 규정과 통칙 적용으로 분류 품목분류 결정 순서	최우선 분류 규정
통칙 2	가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물품의 분류 원칙	
	나	혼합물 복합물에 대한 분류 원칙	
통칙 3	가	협의 호 우선 원칙, 일부규정 각각의 동등협의 인정 원칙	종속적 분류 규정
	나	본질적 특성에 의한 분류 원칙	
통칙 4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 원칙	
통칙 5	가	케이스 및 용기에 대한 분류 원칙	보충적 분류 규정
	나	포장재료 포장용기에 대한 분류 원칙	
통칙 6		소호의 품목분류 원칙	
통칙 7		미 규정 사항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	국내 규정

용어해설

통칙 :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분류를 하는 순서와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많은 품목에 대해 하나의 부호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

Q33

품목분류에 있어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주로 분류가 가능한 품목분류가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물질이나 품목이 혼합 또는 결합된 경우입니다. 관련된 분류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품목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무수히 많은 물품을 거래 목적상 일정한 수의 코드로 분류하여 관세부과나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물품이 그 특성상 여러 개의 코드에 해당하거나 혼합물 또는 복합물 형태로 가공되어 어느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칙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분류가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선, 어느 하나의 물품에는 일부가 다른 재료·물질을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이상의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가장 구체적으로 협의로 규정된 코드로 분류를 하고, 2 이상의 물품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품목의 코드로 분류를 합니다. 이때, 2 이상의 코드가 하나의 품목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호가 다른 호에 비해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호는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질적 특성에 의하되 이러한 분류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호 중 최종 호 즉, 마지막 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특성은 중량, 부피, 가격, 기능, 용도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용어해설

혼합물 : 2 이상의 물품이 혼합되어 구성되는 다른 물품.

복합물 : 2 이상의 물품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다른 물품.

5. FTA 일반

Q34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로 FTA 적용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의 FTA 현황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A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현재 FTA는 단기간에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달성을 목표로 인식되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월 발효기준 55개국과의 16건 FTA가 체결되어 협정을 발효한 상태이며, 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도 타결이 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표된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세계 75개국 수준 GDP 기준 93% 국가와의 FTA 협정체결이 예상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도 협상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FTA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전반적인 효과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FTA 효과의 수혜를 위해서는 협정발효 초기에서의 선점전략이 유효할 것이고, 시간경과에 따라서는 수입선 변경이나 생산기지의 이전보다는 수출국가 다변화의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단계에 맞는 전략을 연구하여 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도 FTA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팔목할 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해설

무역제한조치 : 수출입국가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Q35

FTA 협정문과 국내 FTA 특례법 등 국내법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회에서 비준 후 정부에서 공포한 FTA 협정은 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관세법과 FTA 관세 특례법 등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일반원칙만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및 절차는 국내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FTA 관세 특례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내용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숙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법화된 협정 내용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협정에 대한 참조는 국내법 규정의 적용이 어렵거나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협정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실무적 활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협정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적용과 숙지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고시된 번역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FTA 국내법 :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협정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 FTA 이행을 위한 특례법과 부속법령이 해당. 하나의 부호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

Q36

FTA 비즈니스 모델 활용이 이익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적용효과에 대한 사전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비즈니스모델이란 고객의 욕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FTA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무역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개념을 FTA 시장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FTA 사업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FTA 혜택을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FTA별 시장특성, 마케팅, 협정내용, 바이어발굴, 계약조건, 원산지 기준, 결제조건, 보험조건, 통관절차 등 무역 가치사슬을 FTA 환경에 최적화·합리화 시키는 FTA 환경의 무역 신 사업모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FTA 협정체결이 소수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세특혜를 누리기 위한 거래 또는 생산방식이 주된 연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정국이 늘어나면서는 오히려 그러한 방식보다는 회계적 측면과 방어적 방식의 원산지 관리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개발은 상품미스나 원가관리, ERP 시스템과의 연계, 새로운 협정활용을 통한 수출확대 등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전략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FTA 활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사전평가는 기본적으로는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관세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의 크기에 달려있지만, 단계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용어해설

원산지 기준 : 협정 등에 의해 체약국을 원산지로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가 체약국으로 인정되는 제도.

Q37

얼마전 TPP협정과 RCEP에 대한 참가국간의 협상타결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무역협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협정이 중복되는 경우 특혜세율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역협정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형태로 체결되어 왔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다면, FTA의 경우에는 양자간 협정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한-EU와 한-ASEAN협정은 일대다(一對多)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TPP(Trans-Pacific Partnership)협정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협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협정이 새로이 대두되어온 이유는 무역당사자국간의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자는 데 의미가 있으며 광역화함으로써 하나의 협정을 통해 미협정 체결국과의 협력을 일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의 형성이 경제권 외의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무역이득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협정이 한국의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계속 부각될 것입니다. 아직, TPP에 대한 참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나 참여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으며, RCEP에 대해서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일FTA도 일종의 광역 또는 메가FTA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에 의한 확대와 더불어 무역환경을 새로이 조성해 갈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 협정이 중복되는 경우, 특혜관세율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3개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 수입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적용을 하겠으나, 합리적인 결정은 가장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용어해설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미국,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무역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무역협정.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수출입

6. FTA 적용 및 통관

Q38

어떤 측면에서 보면 FTA 활용은 적용 전 작업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FTA 적용을 위해 계약 전에 실행해야 할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A

적용 전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적용절차의 준수보다는 유리한 적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 및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을 수입 시에는 수입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수입 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적용대상 품목과 협정관세 적용제한 여부는 다양한 경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송부요청을 계약에 반영하고, 배상문제를 계약서에 반영하면 불의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도 협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과 협정관세율 인하 폭,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여 수출거래처에 FTA 협정의 규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송부와 불이행에 따른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어해설

협정세율 : FTA 협정 체약국 양국에 한하여 비 체약국에 비해 특례적으로 적용하는 저세율 또는 무세율

Q39

물품수입 시 여러 가지 세율이 같은 품목에 대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FTA 세율은 다른 세율에 우선하는 것인가요? 그 적용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A

FTA 협정관세율 우선적용 원칙에 따르면, FTA 협정이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FTA 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협정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에는 협정관세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낮은 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나, 사정의 변경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의 협정관세율보다 낮으면 우선적용의 실익이 없으므로 관세법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덤픽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농림축산물특별긴급, 조정(제69조제2호) 관세는 FTA 협정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이러한 관세 등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관세이므로 협정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보복관세가 매우 적으므로 일반적으로 FTA 협정 세율이 실무적으로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동남아 아세안 국가 중에는 FTA 세율을 우선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용어해설

관세법 상 관세율 : 관세법에 의해 규정된 제반 관세율로 기본세율, 잠정세율 등을 의미. FTA 협정세율보다 일반적으로 적용순서가 뒤지나, 일부의 경우는 우선.

Q40

FTA 특별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FTA 협정세율을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까요?

A

우선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품목에 대한 HS 품목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분류코드 확인 방법은 통관 취급 관세사를 통한 확인방법,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코너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시 수입국의 적용혜택을 파악하려면 상대국(수출국)에서의 관세혜택을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FTA특혜관세를 확인하려면

- ① FTA 협정 발효국 확인
- ② 우리나라(또는 수출국) HS확인
- ③ 우리나라(또는 수출국) 관세혜택[(상대국일반세율-FTA세율)*수출금액] 확인
- ④ 수입(또는 수출)계약 체결/조정하기 →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책임소재 명기
- ⑤ 제품받기(또는 선적) [직접운송증빙서류]
- ⑥ 증빙서류 구비하기 → 협정에서 정한 증명서가 아니면 혜택 적용불가
- ⑦ 협정세율 적용하기 → C/O를 바탕으로 작성된 협정적용신청서 제출(또는 C/O등 송부)
- ⑧ 관련서류 보관하기
- ⑨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 등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수출하면서 수입국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HS Code가 적용되므로 국내 HS Code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용어해설

원산지검증 : 원산지 증명서 등에 의해 의한 협정세율 적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수출자 등에 대해 서류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Q41

FTA 적용품목의 경우일지라도 FTA 통관 시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A

일반적인 경우라면, FTA 협정세율의 적용순서는 다른 세율에 비해 우선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정의 변경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율의 세율이 협정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선적용의 실익이 없으므로 관세법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배제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FTA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정이 수출입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여된 일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등의 오류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협정세율의 적용이 중지됩니다. 중지 후 검증절차에 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급하여 적용되어 미적용 분에 대해서는 환급됩니다.

수출자 등 당사자가 협정세율 적용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에 신중하여야 하며, 적용절차 상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용어해설

적용신청 :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 외에 별도로 필요한 신청절차.

Q42

일반적으로 통관은 신고주의에 의한 P/L 신고가 기본입니다. FTA 적용 국가과의 교역 시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FTA 수입통관절차가 일반 통관절차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A

FTA 체제하에서의 통관도 일반 통관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국내의 경우 특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등 이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청시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보정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되어 기납부했던 관세 등 제세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류의 징구 및 제출, 협정세율 적용신청 등이 일반 통관절차와 다릅니다.

용어해설

보정신청 :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할 수 있는 세액보정 신청.

Q43

FTA 통관 시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FTA 세율에 대한 사후 적용절차와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물품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정세율 적용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득이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서류를 확보하여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관세 등은 일단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통관 이후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졌을 때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통관 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사후에 증명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뢰할 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거래가 일시 거래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서류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고 따라서, 사후징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입신고 시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해설

사후징구 : 통관을 위해 우선 수입신고 등의 절차를 밟은 후 확보하지 못한 원산지증빙 서류를 수출자 등에게 요청하여 확보하는 행위.

Q44

원산지 규정은 FTA 협정 적용을 위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타 법에서 원산지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FTA에서 강조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협약 및 법령에서 강조되는 원산지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원산지 규정은 이미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어 실행되어 왔습니다. 1964년 관세법령에 원산지 규정이 도입된 것이 처음입니다. 그 후 대외무역법에도 도입되었으며, 지난 2004년에 제정된 FTA 특례법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특혜규정과 비특혜규정으로 구분되며, 특히, FTA 특례법상의 규정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특례규정입니다.

FTA 협정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WTO 개도국협정(TNDC), 유엔 개도국 협정(GSTP) 등에 의해서도 특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는 달리, 소비자, 생산자, 국내기업 보호와 보건·위생·자연환경보호의 목적으로 합니다.

원산지와 관련한 제도로는 원산지표시 제도, 원산지확인서 제도 그리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이 있습니다.

용어해설

비특혜 원산지 규정 : 비관세무역장벽의 기능을 하는 원산지 규정으로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보건·위생 목적의 원산지 제도.

Q45

**통관 시 신고오류가 발생되면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TA 통관 시 신고오류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며,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최근 FTA 협정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 서류 때문에 신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의 부적절성 때문에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견상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 또는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의 작성과 신고과정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제출되는 원산지 증명서 등이 부적절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류심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항목에 대한 정확하고, 충실한 기재가 필요하고 서류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자 등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불충족 자료에 의한 충족표시는 중대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대응과 적합한 서류의 제시 및 설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류내용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어해설

신고오류 : 통관신고 시 발생하는 문제로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서류의 부적합이 대부분 해당

Q46

원산지 관리 중 원산지 표시도 중요합니다. 매우 많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FTA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수입의 경우는 물론, 수출의 경우에도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각 품목별로 다릅니다. 그 기준은 물론 세번(HS)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상의 표시 원칙을 살펴보면,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현품에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품에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부착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표시방법이 정해져 있기도 하며, 세부적 표시방법조차도 표시가 곤란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표시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현품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단위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관련법령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절 원산지표시 제4조~제7조

7. 원산지판정

Q47

적용되는 여러 가지 원산지 결정기준 중 원산지 판정을 위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은 어떻게 다르고, 원산지 판정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A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된 대부분의 FTA 협정 또는 특례법 규정은 공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분야별 특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원산지 기준 자체에도 보호무역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또는 역내 교역 확대 및 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일기준 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기준에서 택일할 수 있는 선택기준과 둘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기준도 부 또는 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개별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해당되는 경우 적용순위 상의 차이 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품목별 기준에 의해서 또는 치중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정확히 빠짐없이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일반기준 : 협정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품목별 기준은 개별 품목에 대하여 세분화된 기준.

Q48

원산지 결정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은 완전생산기준입니다. 이 기준의 상세내용과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완전생산기준의 의미는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재료가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족이 가장 어려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의 특성상 그러한 기준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 역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생산품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출생, 사육되거나 그로부터 획득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영해에서의 포획된 것 외에 공해·영해 밖에서 일정한 요건의 선박에 의해 포획된 것을 역내산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이란 선박의 등록(등기) 또는 국기계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협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어해설

완전생산기준 : 역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준.

Q49

원산지 결정기준 중 주요기준인 부가가치 기준은 적용 식, 용어 및 개념 등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적용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 기준이란 당해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율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① 직접법: (원산지 재료가격 / 제품가격) *100
- ② 공제법: (제품가격 - 비원산지 재료가격)/제품가격 *100
- ③ 순원가법: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가격)/순원가*100
- ④ MC 방식 : 비원산지재료가격/공장도 가격*100

하지만, 기준가격과 산정공식은 협정마다 달라질 수 있고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율은 동일 협정에서도 품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한-ASEAN에서는 공제법 또는 직접법, 역내부가가치율 40%이 적용되며, 한-미의 경우에는 직접법(30~35%), 공제법(40~55%) 또는 순원가법(35%), 한-EU에는 MC방식(허용 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한도:40~70%(RVC 환산시))가 적용됩니다.

여러 산식과 비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원산지 판정을 위해 결정기준을 적용할 때 정확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판정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복잡성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부가가치율 공식 :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때 원산지 결정을 위해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식.

Q50

원산지 결정기준 중 품목분류에 기초한 주요기준인 세번 변경기준 적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서 완전생산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완전생산품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2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 또는 가공을 거치거나 그러한 물품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원산지재료에 의해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일정한 HS code의 부분품·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결과 다른 HS code의 제품이 역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2단위(CC: Change of Chapter), 4단위(CTH: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에 의한 세번변경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특정한 2, 4, 6 단위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 번 변경을 금지하는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에는 원재료의 일부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산지결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비중이 일정한 비율(10% 또는 8%)미만인 경우 그 원재료를 제외하고 세번변경여부를 판단하는 미소기준(De minimis)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용어해설

미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원산지결정을 적용하는 기준. 불충족 물품의 비율이 작을 때 그 품목은 무시.

Q51

원산지 결정기준인 부가가치 기준에서 적용되는 roll-up 및 roll-down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도 설명해 주세요.

A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 비원산지재료가 포함되었더라도 제조 및 가공이 역내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어느 중간재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간재 전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roll-up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어느 중간재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외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간재 전체를 역외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roll-down이라고 합니다.

협정에 따라서는 그 제조 및 가공의 주체를 자가생산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적용의 범위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한-EU)

이와 유사한 용어로 build-up, build-down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그 의미는 집적법과 공제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roll-up, roll-down과는 구별됩니다.

용어해설

build-up : 부가가치기준에 있어서의 집적법,

build-down : 부가가치기준에 있어서의 공제법.

Q52

부가가치 결정기준에서 유의해야할 부분이 조정가치 산출입니다. 조정가치는 무엇에 대한 것이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A

조정가치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은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될 때 제품가치 또는 원재료 가치 산출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치가 아닌 가산 또는 공제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정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항목에 의해 조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회계적 산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협정상에 합의된 사항으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확보한 가격 또는 비용이 협정상의 것과 다른 경우 보정을 통해 조정가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시 가격신고서 작성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가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산 및 공제항목에 대한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입니다.

정확한 조정가치 산출의 문제는 회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되,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인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자가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우선, 검증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관리방법입니다.

용어해설

조정가치 :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 결정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의된 가치. 기준에 의하지 않고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요소를 반영해 조정한 가격

Q53

1. 원산지 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법칙이 적용됩니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 하여 자주 언급되는 스위스 산 골드바에 관련된 원산지 적용상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A

원산지 판정은 원재료의 수가 많은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 기계 등의 업종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판정의 문제 사례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스위스산 골드바(Gold Bar) 관련 원산지 적용사례입니다.

본 사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저순도금을 스위스로 수입해서 스위스에서 99.9999%의 고순도 골드바로 Purification Process를 거친 후 한국으로 수입한 금괴 수입거래에 관한 경 우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스위스산으로 판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았지만, 한-EFTA FTA의 원산지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의 수입업자(00Bank)가 150억 원을 추징당한 사건입니다. 결국, 원산지 판정상의 오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FTA별 원산지기준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 등의 검증요청에 대해 그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품목분류 오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오류가 2/3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추징 : 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한 후 관청에 의해 잘못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징수.

Q53

2 수입자가 요청하여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발급했던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후 관세당국에서 검증할 수 있나요?

A

수입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관세 당국에 제출하게 되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합법적인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FTA를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는 FTA의 효용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즉, FTA 체결국을 통한 우회수입의 방지,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 및 관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된 FTA 서류로 부정하게 특혜 받은 품목 등을 선별하여 부당하게 받은 특혜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정한 FTA 무역질서 확립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원산지검증 또는 원산지조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검증은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 등 원산지 및 증빙서류 등의 사후 조사를 통해 특혜요건의 적정성 확인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총괄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검증대상에는 FTA 상대국의 증명서 발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및 재료 공급자까지 포함합니다.

용어해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Q54

한-중 FTA가 체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허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허세율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석방법을 알고 싶네요.

A

그동안 많은 관심을 끈 FTA협정이 한-중 FTA이며 발효 6년차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중국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수출입 분야에서 아직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정의 발효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허세율은 협정당사자국간의 교역에 적용되는 특혜세율로 기본세율 등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가능한 관세율입니다. 따라서 세율적용을 위해서는 품목별로 양허세율을 확인하여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허세율은 양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한-중 FTA의 경우에는 양허 스케줄이 다른 협정에 비해 복잡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석에 주의를 하여야 하고 양허 스케줄의 표기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단계적인 관세철폐가 기본방식이며 한국의 스케줄과 중국의 스케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양허 스케줄 표시 중 일부를 살펴보면, '0'은 즉시철폐를 의미합니다. '5'는 5단계(5년간) 균등철폐, PR-1은 발효일 즉시 1%인하, PR-8은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15'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양허 스케줄 표기는 20-A(11년차 초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20-B(13년차 초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PR-1(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인하)등이 있습니다. 협정문 부속서 2장의 양허세율표상의 양허스케줄 표기와 기준관세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양허세율 : 무역협정 당사국간에 상호 상대국에 대해 특별히 허용되며 무역협정문상의 양허세율표를 참조하여 확인이 가능한 관세율.

8. 원산지 서류 및 관리

Q55

통관신고는 서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통관과는 달리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각 FTA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입 또는 수출 시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수출국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체약국이 원산지라는 사실을 증빙해주는 서류가 원산지 증빙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재료/최종물품 공급자가 생산자/수출자에게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자는 자료로써 제공) 또는 원산지소명서 등이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국내제조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증명해 주지만 기재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내역과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산지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자의 오류로 말미암아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수입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날까지)에 세액정정 및 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중 미소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서류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용어해설

수정신고 : 관세 등의 과오납을 바로 잡기 위해 신고하는 절차.

Q56

국내에서 생산한 당사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FTA 협정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A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데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류 중심으로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발급하고, 그 근거가 되는 판정과정을 정확한 자료와 기준 적용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리한 적용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 가능한 한 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용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수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질 뿐만아니라 경쟁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수출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협정국이 늘어나는 경우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명서 발급과정에서는 판정과 작성 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서 근거서류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오류는 단순한 오타나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오류라는 치명적 오류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하게 기재가 되도록 반복체크가 필요합니다.

용어해설

원산지 관리상의 정보관리 :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원가 및 공정관련 정보의 관리.

Q57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근거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표적인 원산지 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그러나, 협정에 따라서는 원산지신고서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수입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근거서류로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니거나, 중간재 또는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납품을 받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재료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에 대한 입증내용을 기술하는 문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원산지소명서입니다. 국내제조확인서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사실은 서류 자체가 원산지가 체약국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유효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내용 입증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기관발급 :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지 않고 관청 등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

Q58

원산지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류를 뒷받침하는 정보 및 서류도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 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문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FTA 통관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산지 증빙서류와 이에 대한 문서 및 정보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적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원산지 판정과 서류제출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적용되는 협정이 늘어나고 제품 및 원재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원산지 결정이 복잡해지고 관리가 필요한 서류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FTA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 솔루션으로는 FTA-PASS와 FTA KOREA 등이 있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출입 규모가 있는 기업은 회사 사정에 적합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민간 솔루션도 있으니 회사가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원산지 판정 및 관련 서류의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솔루션의 이점은 결정기준의 판정을 자동으로 정확히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서류를 솔루션 내부에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솔루션의 활용을 필요에 맞게 하려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증빙서류의 특징을 감안한 적절한 작성 및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잘 이용된다면 원산지 규정 준수와 FTA 효과의 수혜라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해설

원산지관리 솔루션 : 컴퓨터나 웹에 의해 전자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하는 솔루션으로 현재, FTA-PASS와 FTA-Korea가 사용 중.

Q59

넓게 보면 원산지 서류는 통관서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보관관리에 있어서 통관서류 관리와 원산지서류 관리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통관서류에 대한 문서보관기간은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보관기간은 FTA특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 관련 서류는 문서보관기간이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수출신고 관련 서류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2년입니다.

반면에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서류(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는 규정이 중복되므로 원산지 관리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제44조(별첨), FTA특례법시행령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

Q60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기업 측에 발생될까요?

A

이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률적으로 모든 협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인증 수출자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는 협정은 현재 16개의 발효협정 중 7개 협정입니다. 나머지 협정은 혜택부여가 없거나 부여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율발급 방식의 한-칠레, 미국, 터키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특히, 혜택이 강조되는 협정은 한-EU와 한-페루 협정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6000유로 초과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을 혼용하지만 2000달러 초과의 경우 인증을 받으면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아세안, 싱가포르, 인도는 기본적으로 기관발급 방식의 경우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첨부서류 5종의 제출이 생략됩니다. 한-EFTA의 경우에는 자율발급 시 서명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체별 인증을 받으면 품목과 협정에 관계없이 인증효과가 발생되므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인증의 효과가 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Q61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증명발급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서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업체별 인증은 원산지증명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인증을 함으로써 모든 FTA 협정, 모든 물품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이며, 품목별 인증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을 통해 HS 6단위 품목별로 간소한 절차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인증범위는 전자의 경우 모든 협정에 대한 자사생산물품 전체이며 인증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반면, 후자의 인증범위는 HS 6단위별, 해당 협정별 인증품목으로 인증 유효기간 5년입니다. 인증요건상의 큰 차이는 전자의 경우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또는 매뉴얼이 갖추어져야 하며,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법규준수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후자에 대한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한-EU(6,000 유로 이상) FTA, 한-페루 FTA(2천 달러 초과)의 경우에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발급이 허용됩니다.

용어해설

법규 준수도 : 관련 기업이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며 별칙여부 등이 판단기준.

Q62

최근 주요 FTA협정 발효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이자, 원산지 조사 등 원산지 검증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어떤 경우에 실행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원산지 검증은 수출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세관장이 조사하는 제도로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를 위해 FTA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된 물품과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사실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입자와 수출자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정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서면조사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조사하게 되고,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며,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확인요청이 있거나 세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하게 되는 때에는 조사하기 전에 조사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검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일을 준수하여 답변을 하고,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해야 하며, 평소 서류 및 제반 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근거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용어 해설

검증절차 :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관리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행.

Q63

FTA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TA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은 무겁나요?

A

원산지 관련벌칙의 벌칙규정은 형벌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형벌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반한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②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⑤ 재수출 면세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 ⑥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는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서류 보관의무를 어긴 경우 가벼운 위반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벌칙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해설

형벌 :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처벌

과태료 : 행정절차사의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벌칙.

✓ TIP

중소기업수출지원제도

지원사업	사업내용	연락처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042-481-4369)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을 지원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수출금융 지원사업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무역조정기업 지원사업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영위한 일정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FTA활용 지원사업	FTA컨설팅, 활용설명회, FTA체결국 진출지원 및 구매상담회를 통해 기업의 FTA활용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02-769-6661~4)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동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의 설치 운영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연락처
무역피해구제 지원사업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02-2110-556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과 글로벌 전략품목 생산업체로 구성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02-2124-3220/3228)
수출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사업	환율 변동성에 따른 급변하는 기업 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02-2124-3220/3228)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사업	수출의 선적전 금융으로 지급보증 및 결제자금 지원(원자재구매, 생산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 금융)	기업은행(1566-2566)
수출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	수출·해외투자·수입·무역금융, 이행성 보증, 간접 금융지원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중소기업 보험 지원사업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신뢰성 보험 등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

CHAPTER
02

편집위원 소개

▶수출입



고태진

- 관세사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관세법인한림 대표관세사(경영학 박사)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객원교수
- E-mail : telekebi@daum.net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중소기업성공도우미 ☎ 1357, <http://www.mss.go.kr>)
 - 발행일 : 2014년 01월 편집일 : 2020년 07월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수출입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